

수원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나110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나1101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합194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조혜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종태

변론 종결 2022. 6. 9.

판결 선고 2022. 7. 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가합194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0. 체결된 매매계약과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에 관하여 2018.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별지 2. 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하4행의 "5억 5,100만 원의"를 "5억 5,180만 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하7행의 "C은"을 "C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9행, 같은 쪽 11행의 각 "M"을 각 "P"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하8행의 "Q"를 "R"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3행의 "S"을 "T"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C의 채권자인 U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가 그 판결에 따른 금원을 변제공탁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U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확정된 위 판결에 따른 가액회복을 내세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다룬다.

나. 판단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U는 2015. 5. 18.부터 2017. 6. 7.까지 C에게 대여한 합계 10억 3,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U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25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위 법원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2. 4. 1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U에게 410,761,1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2022. 4. 22.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22. 4. 21. U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년 금제4159호로 위 판결에 따른 410,761,184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7, 19 내지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U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U는 C과 부녀관계에 있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에서 U가 C을 믿고 L에게 60여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편취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U가 C에게 10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나아가 U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면서도 U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는 응소하지 않아 U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로서는 민법 제487조 단서에

따라 수인의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취소채권자 전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U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U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에서 명한 금원을 변제공탁한 점(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액수와 위 무변론 판결에서의 청구금액 및 공탁금의 액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 U와 피고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U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도록 하고 U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에 따른 금원을 변제공탁한 피고의 행위는 U와 통모하여 C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가 U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회복을 내세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

판사박광서

판사차지원

별지